

키폰트/ 수출·입 식물검역! 어떻게 이루어지나?

비검역 · 잠정규제 · 미발생병해충까지 검역조치 취한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 불필요 제도는 없애
식물검역 목표달성 '정부 힘'만으로 어려워, 모두 검역원 돼야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농·림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다.

식물검역에는 수출·입식물과 식물성산물에 식물유해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식물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폐기, 반

송 등의 검역조치를 취하는 「수출·입식물검역」과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식물검역」으로 대별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유해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입식물검역」과 당해 농

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식물검역요건에 부합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출식물검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입식물검역

수입식물검역은 전국의 공항·항구에서 수입한 식물을 검역하여 해로운 병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다. 수입식물은 수입항구·공항의 보관창고 등에서 현장검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한다. 일부식물은 국내에 도착한 후 격리지역에서 재배를 하면서 「격리재배검사」를 하고 일부식물은 우리 식물방역관이 수출국에 출장가서 「현지검역」을 한다. 또한 병해충 부착우려가 높은 식물은 「수입금지」제도를 운영하거나 「조건부 수입허용」을 하고 있다.

수입항구·공항에서의 검역

먼저 공항이나 항구에 식물이 들어오면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도착후 지체없이 식물방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게되어 있다.

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지품인지의 여부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확인하게 되고, 수입금지품이거나 식물검역증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물검역증이 있고 수입금지품이 아닐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있는 현장에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현장검사라 한다.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식물방역관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수량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병해충의 부착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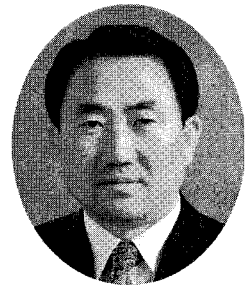
무를 검사한다. 검사시료의량은 식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 다르다.

종자류, 묘목류, 구근류, 생과실, 서류, 신선채소류 등 병해충 부착 비율이 높은 품목과 병해충 부착험의가 있는 식물은 실험실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검사, 배양검사, 사육검사, 파쇄검사, 선충분리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면 레이저현미경, 전자현미경 등과 같은 첨단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분류하고 분류결과 발견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식물을 소독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게 되며,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처리하게 된다.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에 따라서 처분방법은 다르다. 수입금지품이나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식물은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조치를 하게 되며,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을 하게 된다. 만약 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이 부착된 식물은 폐기 또는 반송을 하게 된다.

격리재배검사

바이러스 처럼 병원균이 식물에 잠복되어 있어 공항·항



박 에 상
국립식물검역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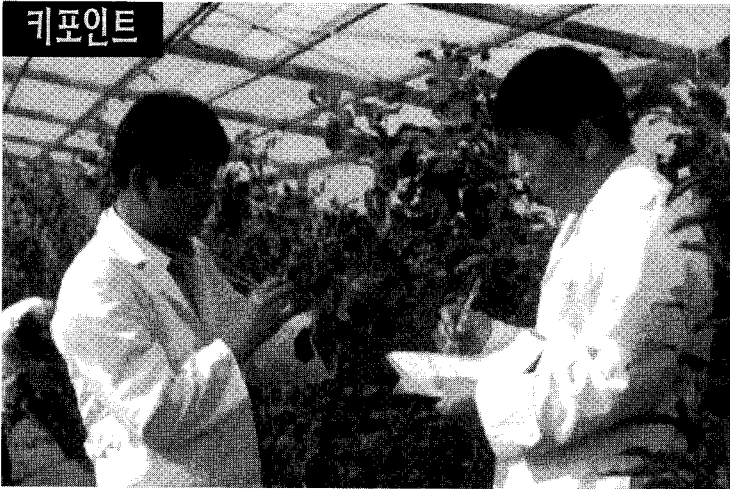
구에서의 검사만으로는 병의 감염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묘목, 구근 등은 격리된 장소에서 재배하여 검사를 한다.

그 방법은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국가격리재배포장 또는 수입자의 격리재배포장에서 재배를 하면서 병해충의 감염여부를 검사하며 격리재배검사를 실시하는 품목은 유실수의 묘목과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화훼구근류 등이 있다. 격리재배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년 또는 1세대간이다.

현지검역

현지검역은 수출국이 당해국가의 식물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이 현지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와 수입금지식물을 조건부로 수입허용하는 경우,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식물방역관이 수출국에 출장하여 수입할 식물 등에 대한 검사를 실

키포인트



병원균이 식물에 잠복되어 있어 공항·항구에서의 검사만으로 감염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묘목·구근 등은 격리된 장소에서 재배하여 검사한다.

시하게 하는 검역제도이다. 현재 현지검역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는 식물은 대만산 여지, 망고 및 풍강오렌지,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등이 있다.

수출국의 식물검역증 첨부

및 조건부 수입허용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물은 수출국에서 검사를 받고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요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수입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소독처리를 한 후에 수입하게 하거나 우리 식물방역관이 현지 검역을 실시한 후에 수입하는 품목이 있다.

수입금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을 금지병해충이라 한다. 이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동 지역을 경유한 기주식물은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없다. 흙에는 각종 식물유해병해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흙 자체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도 수입이 금지되며 병해충 자체도 수입될 수 없다.

수출식물검역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증을 요구하는 식물은 수출 전에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되어야 수출될 수 있다. 수출검사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검사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대부분 실시되고 긴급히 수출해야 하는 식물은 야간과 공휴일에도 검사를 한다.

수출식물검사에는 수출직전

금 지 식 물	금 지 지 역	주요 금지병해충	예 외
모든 사과실, 열매채소, 꽃콩류	세계 전지역	과실파리류(지중해과실파리, 굴과실파리, 오이과실파리 등 과실파리류 12종), 자두애기 잎말이 나방, 자두바구미 등 18종	미국산 오렌지등
벼, 벼짚, 왕겨 등	세계 전지역(일본, 대만제외)	벼줄기선충, 벼이삭미이라병	
배, 사과 등의 묘목	세계 전지역(일본, 대만제외)	배화상병, 사과빛자루병, 자두곰보병	
호두	중국, 미국 등	코드린나방	미국산 탈각호두
감자, 가지, 토마토 등	세계 전지역(일본, 미국 및 호주의 일부지역 제외)	감자암종병, 감자갈썩병, 감자씨스트선충, 감자 흰씨스트선충	
고구마 등	필리핀, 아프리카 등	개미바구미, 고구마바구미	
소나무묘목, 목재류 등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소나무재선충, 소나무종유선병	미국, 캐나다산 제재목

* 식물방역법시행규칙(농림부령) 별표1 또는 통합공고 별표9, 인터넷 식물검역소홈페이지(www.npqs.go.kr) 참고.

에 실시하는 수출검사와 재배 중에 실시하는 재배지검사가 있다. 수출검사에서는 상대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식물인지의 여부, 상대국의 검역병해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상대국이 소독실시를 요구하는 품목인지의 여부, 상대국의 기타수입요건(소독실시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한다. 재배지검사에서는 상대국의 검역병해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재배지역 또는 장소가 상대국의 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현재 미국 수출용 감귤 및 배, 캐나다 수출용 사과 및 배, 호주 수출용 배, 칠레 수출용 배, 뉴질랜드 수출용 배 등은 재배지역지정, 재배중 검사 실시 등 특별요건에 맞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식물검역소에서는 농산물의 수출을 돕기 위하여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출한 농산물이 상대국에 도착된 후에 부당한 검역조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상대국의 부당한 검역처분에 대하여는 상대국 식물검역당국과 협의하여 시정하고 있다.

병해충 관리체계 등 변경

정부는 1995년 1월부터 WTO체제가 출범됨으로서 국내법규를 국제기준과 조화시

킬 필요가 있어 1995년 12월 5일 식물방역법을 전면개정하여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또한 1997년 11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새로 인정한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하여 검역조치를 취하고 비검역병해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1999년 2월 5일 식물방역법을 일부개정하여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경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검역병해충만 검역조치를 취하고 비 검역병해충은 검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검역병해충은 물론 규제 비검역병해충과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해서도 검역조치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문헌상 국내 발생기록은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병해충도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해충의 분포지역등이 변화되어 감자의 수입을 금지하는 지역을 세계전지역으로 변경하고 복숭아속식물의 묘목 및 히말라야시다속식물의 묘목과 목재류도 수입금지 식물로 하는 등 수입금지지역과 식물을 변경하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수입금지 품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꼭 필요치

않는 제도는 폐지하였다.

'목표달성' 위한 모두의 협조 있어야

정부는 수입식물에 대하여 철저히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검역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외국여행중 식물을 가져오시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히 외국에서 식물을 수입하거나 해외여행중에 식물을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식물방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출하는 농산물은 재배중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확후에도 선별작업을 잘 해야 한다. **농약정보**

**식물검역은 제2의 국방
수입식물에 대한 철저하고
빈틈없는 식물검역 실시**

- 병해충 부착률이 극히 높은 식물은 수입 금지
- 현장검사에서 병해충 판정이 미심쩍은 수입농산물은 실현실이나 격리재배포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정밀검사 실시
- 수입국의 수입요건에 맞는 농산물만 식물검역증 발급
- 검역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의 범위 확대
- 식물 휴대반입시 식물방역관에게 꼭 신고요망